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1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1나1120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1129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269,955,2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955,26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금 385,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2. 17.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 등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여 38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B은 2019. 6.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이 2019. 7. 2.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24. C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268,069,1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1,886,13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 2) 갑 제4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 제10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2020. 7.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시가 750,000,000원), ② 자동차 3대(시가 52,500,000원)1)

합계 802,500,000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C은행)의 피담보채무 330,904,536원, ㉡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66,400,000원, ㉢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 66,600,000원, ㉣ D 봉고Ⅲ 1톤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피담보채무 16,300,000원 합계 680,204,536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22,295,464원 많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B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9. 6. 18. 20,000,000원, 2019. 6. 20. 200,000,000원, 2019. 6. 26. 18,897,808원 합계 238,897,808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291,397,808원(=자동차 3대 시가 52,500,00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38,897,808원), 소극재산 349,300,000원(=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66,400,000원 +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6,600,000원 + D 봉고Ⅲ 1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3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적극재산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권과 재고자산 20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먼저,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H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767)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0. ‘H는 B에게 149,282,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3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2019. 10. 4.자로 폐업한 점, B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판결금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결국 위 판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역시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 29. B으로부터 아산시 I 대 476㎡와 J 대 893㎡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B이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B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갑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29. B으로부터 아산시 I 대 476㎡와 J 대 893㎡를 매수하고, 2019. 2. 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C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2020. 7.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30,184,6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419,815,325원(=750,000,000원 - 330,184,675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69,955,269원(=대위변제금 268,069,137원 + 대지급금 1,886,132원) 중 적은 금액인 269,955,269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69,955,2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69,955,26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

목록

1. 충청남도 아산시 [] 대 1,187㎡
2. 충청남도 아산시 [] 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화장실 80.52㎡
2층 사무실 40.29㎡
3. 충청남도 아산시 [] 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
경량철골구조 단열판별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제조시설 180㎡
4. 충청남도 아산시 [] 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
경량철골구조 단열판별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창고 180㎡, 이상. 끝.

1) F 체어맨W(시가 18,000,000원), G K9(시가 23,000,000원), D 봉고III 1톤(시가 11,500,000원)